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02
----------	-------

발의연월일 : 2026. 10. 6.

발 의 자 : 노종면 · 김영진 · 전현희
윤준병 · 윤종균 · 김윤덕
김 현 · 김주영 · 김영배
이정문 · 최기상 · 이주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크로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영화의 입장권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기 상영관의 경우 매크로 등을 이용한 입장권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 일반 영화 관람객의 관람권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영화관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알선하거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으로써 영화관 입장권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영화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 제95조의2 및 제97조의2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화상영관입장권·영화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5조의2 제목 외의 부분 중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제9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2(몰수·추징) 제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9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영화상영관입장권·영화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u> <u>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u> <u>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u>

제95조의2(벌칙) <u>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u>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 제95조의2(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u>1.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u> <u>2. 제62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u> <u>제97조의2(몰수·추징) 제95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할 수 있으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u>
--	---